

제165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면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6면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1면
6. 지하철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15면
7.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건의안	19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7. 2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년 7월 18일 · 안재홍 의원 외 3인

나. 회부일자 : 2006년 7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6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6. 7. 21)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 재 홍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난 5.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정당별 공천제가 실시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어, 국회와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별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간의 효율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의회운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의회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다. (안 제2조 제1항)
-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안 제2조 제2항)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2조 제3항)
- 의장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안 제3조)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보고자 : 전문위원 라 도 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안재홍 위원의 심사 보류안 동의

6. 심사보류안의 요지

-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원 상호간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함

7. 심사결과 : 심사보류

(안재홍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가결함)